개 인 정 보 보 호 위 원 회 심의 • 의결

안건번호 제2022-013-101호

안 건 명 개인정보보호 법규 위반행위에 대한 시정조치에 관한 건

피 심 인 김 ㅇ ㅇ (생년월일)

서울

의결연월일 2022. 8. 10.

주 문

피심인 김ㅇㅇ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과태료를 부과한다.

가. 금 액: 3,000,000원

나. 납부기한 : 고지서에 명시된 납부기한 이내

다. 납부장소 : 한국은행 국고수납 대리점

이 유

I. 피심인의 일반 현황

피심인은 서울 ㅇㅇ구에 위치한 고시원인 ◇◇◇◇을 '00.0월부터 '00.0월 현재까지 운영하는 자로 입실계약서를 통해 입실자의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개인정보 보호법¹)(이하 "보호법"이라 함) 제2조제5호에 따른 개인정보처리자이다.

¹⁾ 現 개인정보 보호법[법률 제16930호] (2020.8.5.) 적용

Ⅱ. 사실조사 결과

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국민신문고를 통해 개인정보 침해신고센터에 접수 ('21.3.11.)된 개인정보 침해신고와 관련하여 조사를 실시하여, 다음과 같은 사실을 확인하였다.

1. 행위 사실

피심인은 ◇◇◇◇ 운영기간('00.0월 ~ '00.0월(조사현재)) 동안 고시원 입실계약서를 통해 주민등록번호를 포함한 개인정보(이름, 주소, 연락처 등)을 처리 (수집·보유)하였다. 해당 입실계약서에는 동의여부를 표시하였으나 개인정보수집 동의에 따른 고지항목은 표시되지 않았다.

2. 처분의 사전통지 및 의견 수렴

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2022. 1. 3. '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행정처분 사전통지' 공문을 통하여 이 사건에 대한 피심인의 의견을 요청하였으나 별도 의견을 제출 하지 않았다.

Ⅲ. 위법성 판단

1. 법적 근거 없이 주민등록번호를 처리한 행위

가. 관련 법령의 규정

보호법 제24조2제1항은 개인정보처리자는 제1호법률·대통령령·국회규칙·대법원 규칙·헌법재판소규칙·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및 감사원규칙에서 구체적으로 주민 등록번호의 처리를 요구하거나 허용한 경우, 제2호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, 신체,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명백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, 제3호제1호

및 제2호에 준하여 주민등록번호 처리가 불가피한 경우로서 보호위원회가 고시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주민등록번호를 처리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.

나. 위법성 판단

법령에 근거하는 등 보호법에 명시한 경우를 제외하고 주민등록번호를 처리할 수 없음에도 법적 근거 없이 주민등록번호를 처리한 피심인의 행위는 보호법제24조의2제1항 위반에 해당한다.

Ⅳ. 처분 및 결정

1. 과태료 부과

보호법 제24조의2제1항을 위반한 피심인에 대해 같은 법 제75조제2항제4호의2, 같은 법 시행령 제6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.

가. 기준 금액

최근 3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 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으므로 1회 위반에 해당하는 금액 600만원을 적용한다.

< [별표2] 과태료의 부과기준 >

		과태료 금액(단위: 만원)			
위반행위	근거 법조문	1회 위반	2회 위반	3회 이상 위반	
차.법 제24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주민등록번호를 처리한 경우	법 제75조 제2항제4호의2	600	1,200	2,400	

나. 과태료의 가중

피심인의 위반행위는 보호법 시행령 [별표2] 과태료의 부과기준 1. 라.에 따른 가중할 수 있는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가중을 하지 않고 기준금액을 유지한다.

< 과태료의 부과기준 1. 라. >

- 라. 부과권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과태료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금액을 늘려 부과할 수 있다. 다만, 늘려 부과하는 경우에도 법 제75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상한을 넘을 수 없다.
- 1) 위반의 내용·정도가 중대하여 소비자 등에게 미치는 피해가 크다고 인정되는 경우
- 2) 위반기간이 3개월 이상인 경우
- 3) 그 밖에 위반행위 정도, 동기와 그 결과 등 고려하여 괴태료를 늘릴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

다. 과태료의 감경

피심인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이고, 해당 행위가 위반인지 몰랐으며 위반행위가 사소한 부주의에 해당하고 법 위반 상태를 해소한 점, 조사에 적극 협조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호법 시행령 [별표2] 과태료 부과 기준에 따라 기준금액의 50%인 300만원을 감경한다.

< 과태료의 부과기준 1. 다. >

- 다. 부과권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과태료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금액을 줄일 수 있다. 다만,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위반행위자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다.
- 1) 위반행위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
- 2) 위반의 내용·정도가 경미하다고 인정되는 경우
- 3) 위반행위자가 법 위반상태를 시정하거나 해소하기 위하여 노력한 것이 인정되는 경우
- 4) 위반행위자가 「중소기업기본법」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인 경우
- 5)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,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과태료를 줄일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

라. 최종 과태료

피심인의 보호법 제24조의2제1항 위반행위에 대해 기준금액 600만원에서 50%를 감경한 300만원을 부과한다.

< 최종 과태료 산출내역(안) >

과태료 처분의 근기	과태료 금액 (단위:만원)				
위반 조항	처분 조항	기준 금액(A)	가중액 (B)	감경액 (C)	최종액(D) D=(A+B-C)
제24조2(주민등록번호 처리의 제한)제1항	법 제75조 제2항제4호2	600	1	300	300

[☞] 피심인이 과태료 고지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과태료를 자진납부 하는 경우, 100분의 20을 감경함(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 준용)

V. 결론

피심인의 보호법 제24조의2제1항 위반에 대하여 같은 법 제75조제2항제4호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3조에 따라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.

이의제기 방법 및 기간

피심인은 이 과태료 부과처분에 불복이 있는 경우, 「질서위반행위규제법」제 20조의 규정에 따라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서면으로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.

과태료 부과처분에 대한 피심인의 이의제기가 있는 경우,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과태료 부과처분은 「질서위반행위규제법」제20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그 효력을 상실하고 관할법원(당사자 주소지의 지방법원 또는 그 지원)이 과태료 재판절차에 따라 결정한다. 이 경우 피심인은 관할법원의 과태료 재판이 확정된이후 재판 결과에 따라 과태료 납입 의무를 부담한다.

2022년 8월 10일

- 위원장 윤종인 (서명)
- 위 원 강정화 (서명)
- 위 원 고성학 (서명)
- 위 원 백대용 (서명)
- 위 원 서종식 (서명)
- 위 원 이희정 (서명)
- 위 원 지성우 (서명)